

K-MOOC 학점인정 지침

제 정 :2020. 2. 17.
개 정 :2020. 6. 15.
개 정 :2021. 8. 20.
개 정 :2023. 7. 10.
개 정 :2024. 1. 12.

1. 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3조 ②항에 의거 학점 인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제1조(목적)이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칙 제34조에 의거 K-MOOC(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)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K-MOOC 학점인정” 이라 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-MOOC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인정기준 및 학점)①K-MOOC 이수 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받은 재학생에 대하여 과목당 1학점, 학기별 최대 3학점, 재학기간 중 최대 6학점까지 일반선택 또는 교양선택, 졸업인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6.15.>

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제개편에 따라 폐지된 학과(전공)의 7학기 이상 재학생 중 개설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도 졸업요건 전공이수 학점 충족이 어려운 경우, 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, 학기별 최대 인정학점과 재학 중 인정학점을 9학점까지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.<신설 2021.08.20.><개정 2024.01.12.>

제4조(신청시기 및 절차)①특별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일정 기간 내 K-MOOC 학점인정 신청서와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성적처리)①K-MOOC 특별학점의 성적은 P/N으로 표기한다.②학점인정은 학기 중으로 표기하며,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. <개정 2020.06.15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개정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